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0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이기현 · 신장식 · 이용우  
고민정 · 김 윤 · 박지원  
문진석 · 이주희 · 박수현  
장철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제9항에”를 “제10항에”로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을 “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을 “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로 한다.

제50조제5항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의2(중전의 제1호) 중 “제29조제5항을”을 “제29조제6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중전의 제1호의2) 중 “제29조제6항의”를 “제29조제7항의”로 한

다.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제98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제5항의”를 “제6항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④ ~ ⑨ (생 략)</p> <p>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u>제29조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u>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p>	<p>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u></p> <p>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p> <p>⑪ -----<u>제9항</u>-----<u>제10항에</u>----- ----- ----- ----- ----- ----- -----.</p> <p>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 -----<u>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u>----- ----- ----- ----- -----</p>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 ~ 8.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

-----  
-----  
-----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7항까지를-----
  3. ~ 8. (현행과 같음)
- ② -----  
-----  
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  
-----

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50조(등급분류) ① ~ ④ (생략)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9조 제8항-----  
-----.

⑥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5조(벌칙) -----  
-----  
-----.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의2. 제29조제6항-----  
-----

<p>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p> <p><u>1의2. 제29조제6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p> <p>2. ~ 12. (생략)</p> <p>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29조제4항</u> 또는 <u>제5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p> <p>2. ~ 6. (생략)</p> <p>② · ③ (생략)</p>	<p>-----</p> <p><u>1의3. 제29조제7항의</u>-----</p> <p>-----</p> <p>2. ~ 12. (현행과 같음)</p> <p>제98조(과태료) ① -----</p> <p>-----</p> <p>-----</p> <p>-----.</p> <p>1. <u>제29조제5항</u>-----<u>제6항의</u>-----</p> <p>-----</p> <p>-----</p> <p>-----</p> <p>-----</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